

瑞山市議會事務局設置및事務職員의定數등에관한條例改正條例案  
**檢 討 報 告**

· **發 議 者** : 가대현의원의 6인

· **發議日字** : 1998. 9. 15

· **改正理由**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('98.8.31)됨에 따라 조례 내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,
-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조례 모델(안)을 참고하여 개정하려는 것임.

· **主要骨子**

- 조례의 제명을 서산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함.
-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,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 운영 등의 사무를 처리함(안 제2조)
-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함(안 제3조)

-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두고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, 그외의 일반적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·감독을 받음(안 제4조)

## 5. 檢討意見

-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전문위원의 임무 부여를 명확히 하고,
- 행정자치부의 조례 모델(안)을 참고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별 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